

1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(대통령령 제34707호, '24.7.16. 공포, '24.7.17. 시행) 개정으로 전면 정비된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맞추어 보고해야 하는 재난상황 재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 [별표 1의3]을 준용하여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재정비함(안 제5조의2)
- 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인용조문 정비(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

4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 제23조 중 “영 제83조의8제4항”을 “영 제83조의9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다목 중 긴급구조지휘대(이하“긴급구조지휘대”)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(이하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)”로 한다.

제16조제목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제24조제5항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제39조제3항제2호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별표 5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별표 10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재난상황의 보고 대상)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의2(재난상황의 보고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산림보호법」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	1.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
2.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 · 붕괴 · 폭발	<삭 제>
3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, 붕괴, 폭발	<삭 제>
<신 설>	4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 상황

4. (생 략)	2. (현행 제4호와 같음)
5. 「 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</u>	<u><삭 제></u>
6. (생 략)	3. (현행 제6호와 같음)
7. 「 <u>가축전염병 예방법</u> 」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<u>가축의 발견</u>	<u><삭 제></u>
8. 「 <u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3항에 따른 <u>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화재 등 관련 사고</u>	<u><삭 제></u>
9. 「 <u>수도법</u> 」 제7조에 따른 <u>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</u>	<u><삭 제></u>
10. 「 <u>물환경보전법</u> 」 제16조에 따른 <u>수질오염 사고</u>	<u><삭 제></u>
11. 「 <u>유선 및 도선 사업법</u> 」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<u>유선·도선의 충돌, 좌초, 그 밖의 사고</u>	<u><삭 제></u>

12. 「<u>화학물질관리법</u>」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	<삭 제>
13. 「<u>지진·화산재해대책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의 발생	<삭 제>
1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	<삭 제>
제23조(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의 응시원서) 영 제83조의8제4 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(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22 호서식에 따른다.	제23조(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의 응시원서) 영 제83조의9제4 항----- ----- ----- -----.